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 가 의뢰인 서광주농업협동조합장

건 명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0-1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서번호 미래새한 2504-51-17007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TEL : (061)332-7475 FAX : (061)332-1482





감정평가 심사인증서

제 출 처	서광주농업협동조합		
발 의 처	광주전남지사	감정서번호	2504-51-17007
평가목적	공매	담당평가사	김규진
물건소재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0-1		
감정평가액	₩ 1,516,619,790		

◆ 심사 내용

1.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2.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
3. 평가자료채택 및 기재내용의 적정성
4. 관련법규 및 제규정과의 적합성
5. 협약내용 및 협조사항의 이행
6. 기타 감정평가에 관련된 사항

본 감정평가서는 우리 법인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였으며, 제 규정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위 감정평가서는 우리 법인의 심사규정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 되었기에 본 심사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 규 진

김 규 진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대표자 김 창 현



감정평가액 일십오억일천육백육십일만구천칠백구십원정 (₩1,516,619,790.-)

의뢰인		서광주농업협동조합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채무자		--		제출처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소유자 (대상업체명)		여순고 (수탁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4-23		2025-04-23		2025-04-23	
		공부 (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내용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90.9	토지	490.9	1,420,000	697,078,000			
	건물	878.475	건물	878.475		819,541,790			
			이하		여백				
합계						₩1,516,619,79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박

평 감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페이지: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0-1	대	일반상업지역	490.9	490.9	1,420,000	697,078,000	
가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대림4길 17	1770-1 위지상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및 창고시설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지붕 2층					
				지하	438.21	438.21	840,000	368,096,400	1,000,000 x 42/50 주차장
				1층	252.32	64.375	146,000	9,398,750	200,000 x 22/30 1층 주차장, 경량철골구조
				1층	187.945	375.89	1,176,000	442,046,640	1,400,000 x 42/50 1,2층 제조업소, 사무소
	합 계			이	하	여	백	₩1,516,619,79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소재 '대림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서광주농업협동조합에서 의뢰된 구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가. 토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덕례리 1770-1	490.9	490.9	대	일반 상업	상업용	소로 각지	세장형 평 지	549,000	-

나. 건 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0-1 (전라남도 광양시 대림4길 17)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지붕		(철근)콘크리트, 기타지붕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사용승인일자		2016-12-09	
			증축일자		-	
일련번호	연면적 (㎡)	용적률 (%)	건축면적 (㎡)	건폐율 (%)	규모 (지하/지상)	비고
가	878.475	76.57	252.32	51.39	-1/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가치

가. 개 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구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4월 23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물건은 2025년 04월 23일자 현장실사를 통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에 의거하여 평가함.

2.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및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산가액(試算價額) 조정 및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는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대상건물의 감정평가는 구조·용도·사용자재·시공정도·부대설비 상태 등을 기초로 한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을 적용하되, 건물만의 거래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않고 건물만의 임대사례 등 자료수집이 곤란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않은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4. 그 밖의 사항

일련번호 가 일부는 용도 및 부대설비 등이 달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토지 감정평가액

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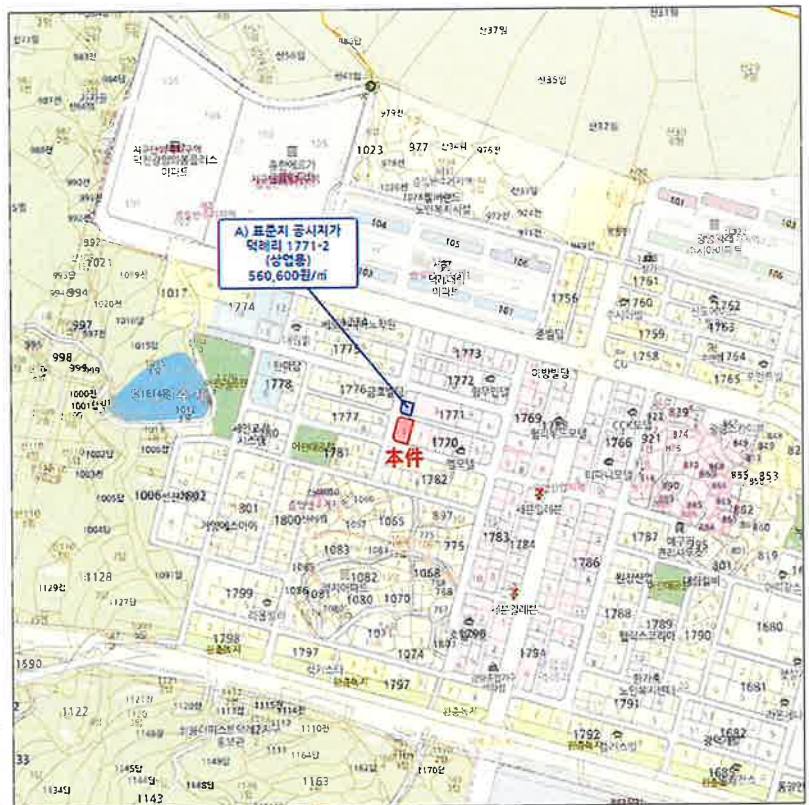
1)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그 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표준지 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공시기준일 : 2025-01-01]

표 준 지	A
소 재 지	덕례리 1771-2
면 적 (㎡)	180.6
지 목	대
용 도 지 역	일반상업
이 용 상 황	상업용
도 로 교 통	소로각지
형상, 지세	정방형 평 지
공 시 지 가 (원 / ㎡)	560,6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비교표준지	시 군 구	용도지역	산 정 기 간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 고
A	전라남도 광양시	상업	2025-01-01 ~ 2025-04-23	0.209	1.00209	2025년 02월 연장적용

3)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견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 일련번호 1 / 표준지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표준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1.00	대등함.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1.00	대등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대등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지	1.05	3면획지 등에서 우세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대등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 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			1.0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나)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비고
일반상업	상업용	소로변	1,450,000 내외	-

다)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조건	평가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원/㎡)	기준시점당시 개별공시지가(원/㎡)
①	덕례리 1783-3	대	335.4	상업용	일반상업	세로(가)	경매	2024-03-11	1,230,000	526,400
②	덕례리 1783-10	대	439.4	주상나지	일반상업	소로각지	경매	2023-08-04	1,520,000	563,500
③	덕례리 1786-1	대	192.1	상업용	일반상업	소로각지	경매	2022-11-17	1,460,000	575,100
④	덕례리 1796-10	대	440.9	상업용	일반상업	소로한면	담보	2024-12-19	1,460,000	597,900

라)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토지면적(㎡)	거래금액(원)	토지거래단가(원/㎡)	거래시점
㉠	덕례리 1793-1	대	상업나지	일반상업	365.5	743,000,000 (토지만거래)	2,030,000	2022-03-30
㉡	덕례리 1794-2	대	상업나지	일반상업	264.5	560,000,000 (토지만거래)	2,120,000	2023-10-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① 비교사례 선정

상기 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비교표준지	선정사례
A	평가사례 ③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식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단가}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토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평가사례	③	1,460,000	1.01852	1.000	0.912	1,356,180	2.414	
표 준 지	A	560,600	1.00209	-	-	561,772		
산 내 출 역	시점수정	· 전라남도 광양시 상업(2022-11-17~2025-04-23): 1.01852						
	지역요인	· 비교표준지는 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0)						
	개별요인	가로조건 (택지조성)	접근조건	환경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0.95	0.96	1.00	1.00	1.00	1.00	0.912
		·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감정평가 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등을 종합분석하고,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및 공시 지가의 현실화를 등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일련번호	표 준 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	A	2.414	2.41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일련 번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A	560,600	1.00209	1.000	1.050	2.41	1,421,563	1,420,000	-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1) 평가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으로서, 대상 토지의 합리성 검토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2)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일련번호						거래사례		
1						㉠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	덕례리 1794-2	대	상업 나지	일반 상업	264.5	560,000,000 (토지만거래)	2,120,000	2023-10-25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사정보정

“사정보정(事情補正)”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사례의 거래시점으로부터 대상토지의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대상토지의 기준시점까지 조사·발표되지 않은 기간의 지가변동률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대상토지의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 사례	시 군 구	용도지역	산 정 기 간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비 고
㉔	전라남도 광양시	상업	2023-10-25 ~ 2025-04-23	1.527	1.01527	2025년 02월 연장적용

5)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건	대상토지는 거래사례가 속한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개별요인 비교

■ 일련번호 1 / 거래사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사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0.78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0.90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0.90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 환경 등에서 열세함.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지	1.05	3면획지 등에서 우세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대등함.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 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			0.66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㉔	2,120,000	1.00	1.01527	1,000	0.663	1,427,023	1,430,000	-

다.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결정단가 (원/㎡)
1	1,420,000	1,430,000	1,420,000

라.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산정된 시산가액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볼 때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마. 토지 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0-1	490.9	490.9	1,420,000	697,078,000	-
합 계		490.9	490.9	-	697,078,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 감정평가액

가. 대상 건물의 개요

1) 동별·층별 개요

일련 번호	명칭	층별구조	세부용도	층별	공부면적 (㎡)	사용승인일자 (증축)	비고
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부속주차장))	지1층	352.755	2016-12-09	-
		철근콘크리트구조	창고시설(기타창고)	지1층	85.455	2016-12-09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1층	100.955	2016-12-09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1층	86.99	2016-12-09	-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부속주차장))	1층	64.375	2016-12-09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2층	187.945	2016-12-09	-
합 계		-	-	-	878.475	-	-

2) 부대설비 내역

일련 번호	층 별	난방설비	시스템 냉·난방 설비	위생/급· 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태양광 설비
가	지1층, 1층(주차장)	-	-	-	-	-	-	-	-
	1층,2층	-	○	○	○	-	-	-	○ (옥상 소재)

나. 재조달원가 결정

1) 산 식

표준단가(원/㎡)	+	부대설비(보정)단가(원/㎡)	=	재조달원가 (원/㎡)
구조, 규모,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등		전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표준단가

■ 건물 표준단가 예시

“건물표준단가”는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 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평가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 결정에 참고 할 건물표준단가는 아래와 같음.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예시 (원/㎡)	내용년수
8-1-5-5	일반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이하)	1	1,462,000	55 (50~60)

[출처: 한국부동산원 2024년도 건물신축단가표]

■ 표준단가 결정

대상건물의 표준단가는 “건물표준단가” 예시를 참고하되 건물의 구조, 용도, 시공의 정도 및 관리상태, 마감재 수준, 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표준단가를 결정하였음.

일련 번호	구조	용도	층별	표준단가 결정 (원/㎡)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상	중	하
가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창고	지1층	1,000,000	중		
	경량철골구조	주차장	1층	200,000	중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소, 사무소	1층,2층	1,400,000	중		

3) 부대설비(보정)단가

대상건물의 부대설비(보정) 단가는 건물 표준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비용으로서 부대설비의 종류 및 현상, 시공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설비(보정) 단가를 결정하였음.

일련 번호	층별	난방설비	시스템 냉·난방 설비	위생/급· 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설비	태양광 설비	부대설비단가 (원/㎡)
가	지1층, 1층 (주차장)	--								
	1층, 2층	표준단가에 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재조달원가 결정

대상건물의 구조 및 용도, 사용자재 및 시공상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에 적용할 표준단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에 부대설비(보정) 단가를 가산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일련 번호	층별	용도	적용 표준단가 (원/㎡)	부대설비(보정)단가 (원/㎡)	적용 재조달원가 (원/㎡)
가	지1층	주차장, 창고	1,000,000	-	1,000,000
	1층	주차장	200,000	-	200,000
	1층,2층	제조업소, 사무소	1,400,000	표준단가에 포함	1,400,000

다.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감가수정(減價修正)”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으로서, 대상건물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 하되, 감가수정 방법은 건물의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정액법”으로 건물단가를 산정하였음.

일련 번호	층별	용도	재조달원가 (원/㎡)	잔존내용연수		내용 연수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사용승인일자 (증축)
				실제	유효				
가	지1층	주차장, 창고	1,000,000	42	42	50	840,000	840,000	2016-12-09
	1층	주차장	200,000	22	22	30	146,667	146,000	
	1층,2층	제조업소, 사무소	1,400,000	42	42	50	1,176,000	1,17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건물 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층별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 고
가	지1층	438.21	438.21	840,000	368,096,400	주차장
	1층	64.375	64.375	146,000	9,398,750	주차장, 경량철골구조
	1,2층	375.89	375.89	1,176,000	442,046,640	제소업소, 사무소
합 계		878.475	878.475	-	819,541,79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가. 토 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동 규칙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 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나. 건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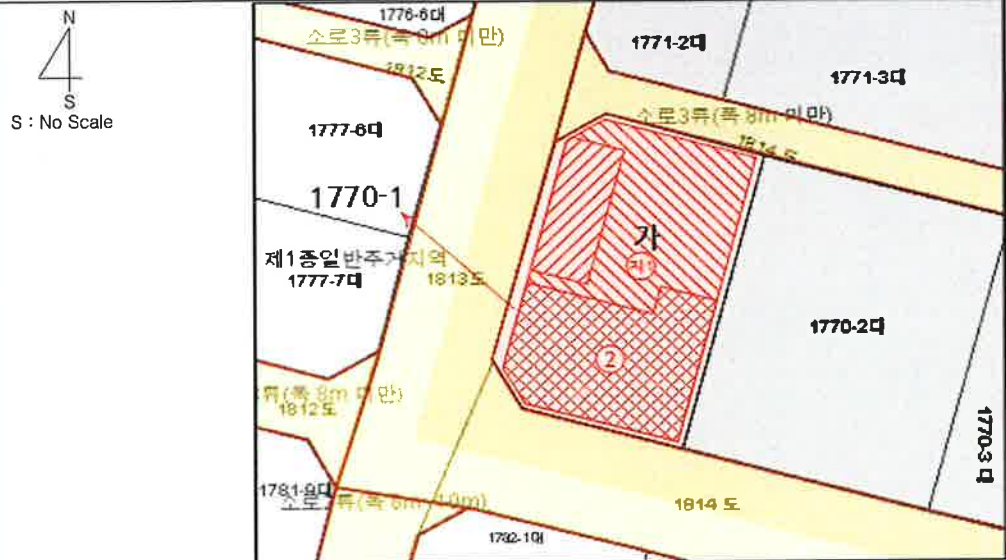
대상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조·용도·사용자재·시공정도·부대설비 상태 등을 기초로 한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인 “원가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697,078,000	상세내역은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건 물	819,541,790	
합 계	1,516,619,790	-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지 적 개 황 도



지 리 적 위 치
및 주 위 환 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소재 '대림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숙박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상가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 통 상 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접 면 도 로 상 황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지 세 , 형 상
및 이 용 상 황

세장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토 지 이 용 계 획
및 공 법 상 제 한
사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 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임.

제사목록 외의 물건

--

공 부 와 의 차 이
및 기 타 사 황

--

임 대 관 계 등

--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건 물 전 경



건물의 구조, 규모 및 마감재 등

일련번호 가 :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지붕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징크판넬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팅, 치장벽돌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 에폭시코팅, 데코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이 용 상 황

지1층 : 주차장, 창고,
1층,2층 : 주차장, 제조업소, 사무소로 이용 중임.

위생 및 냉·난방 등 부 대 설 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중물 관 계

--

공부와 의 차이 및 기 타 사 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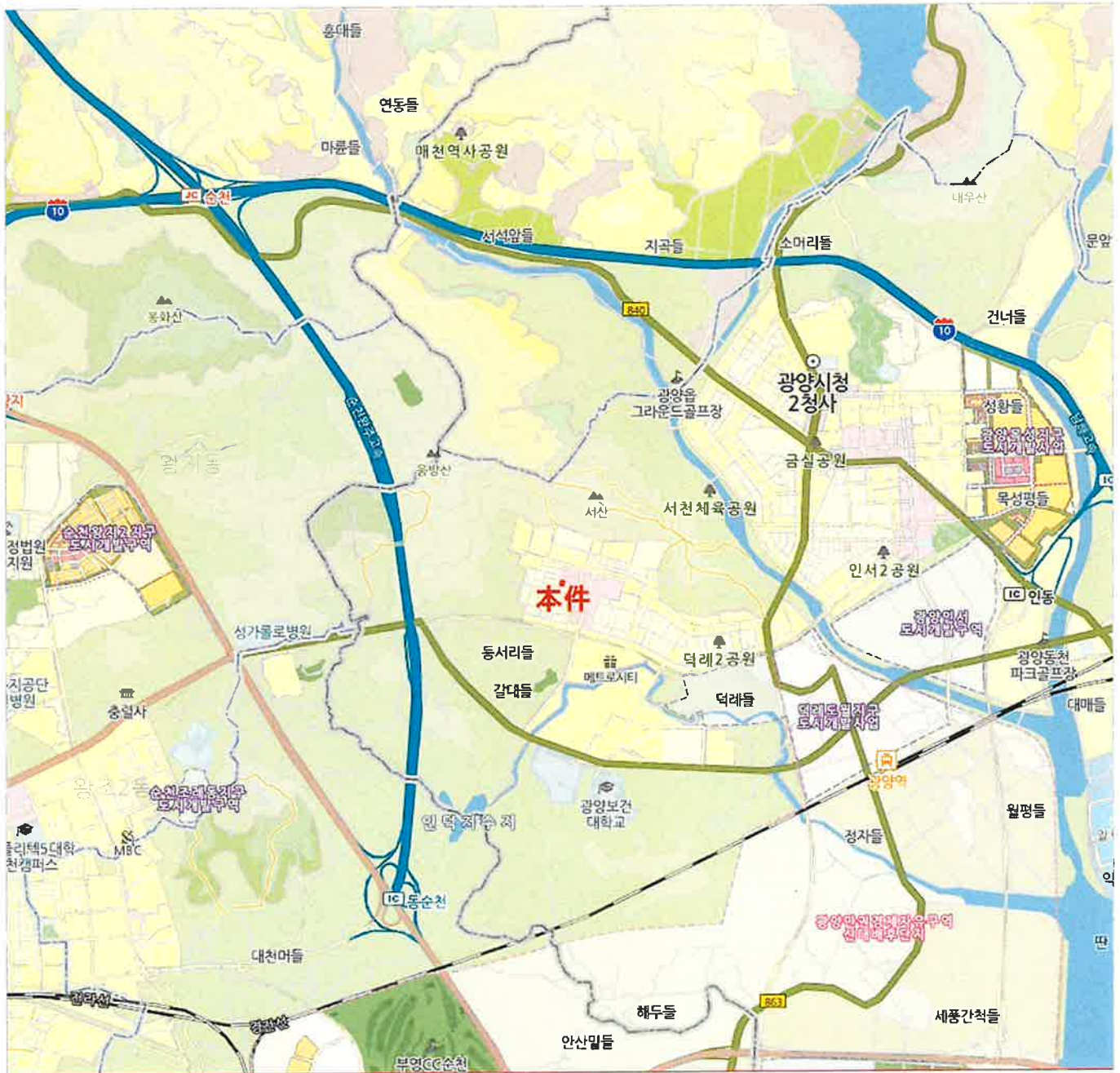
임 대 관 계 등

--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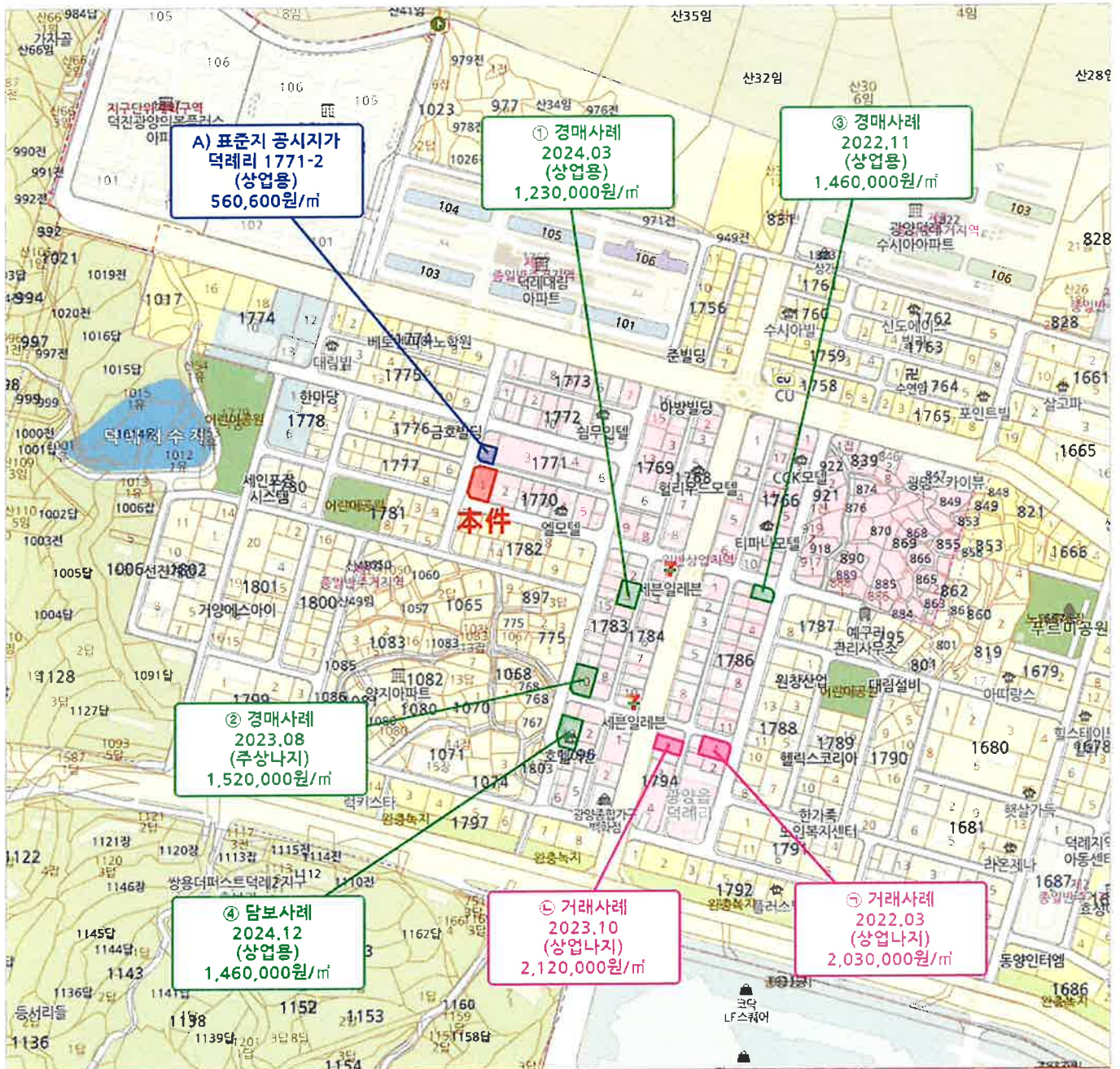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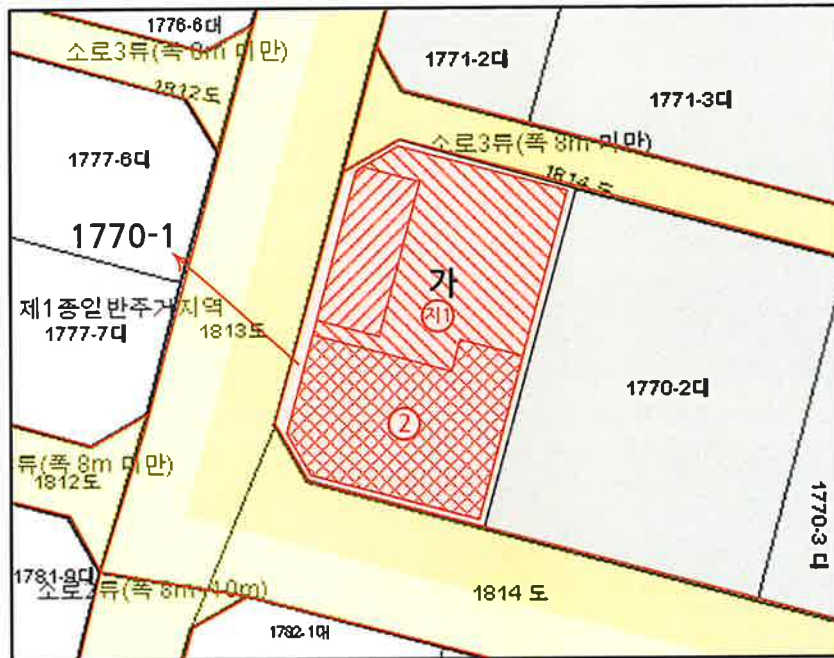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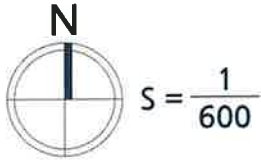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0-1



지적 및 건물 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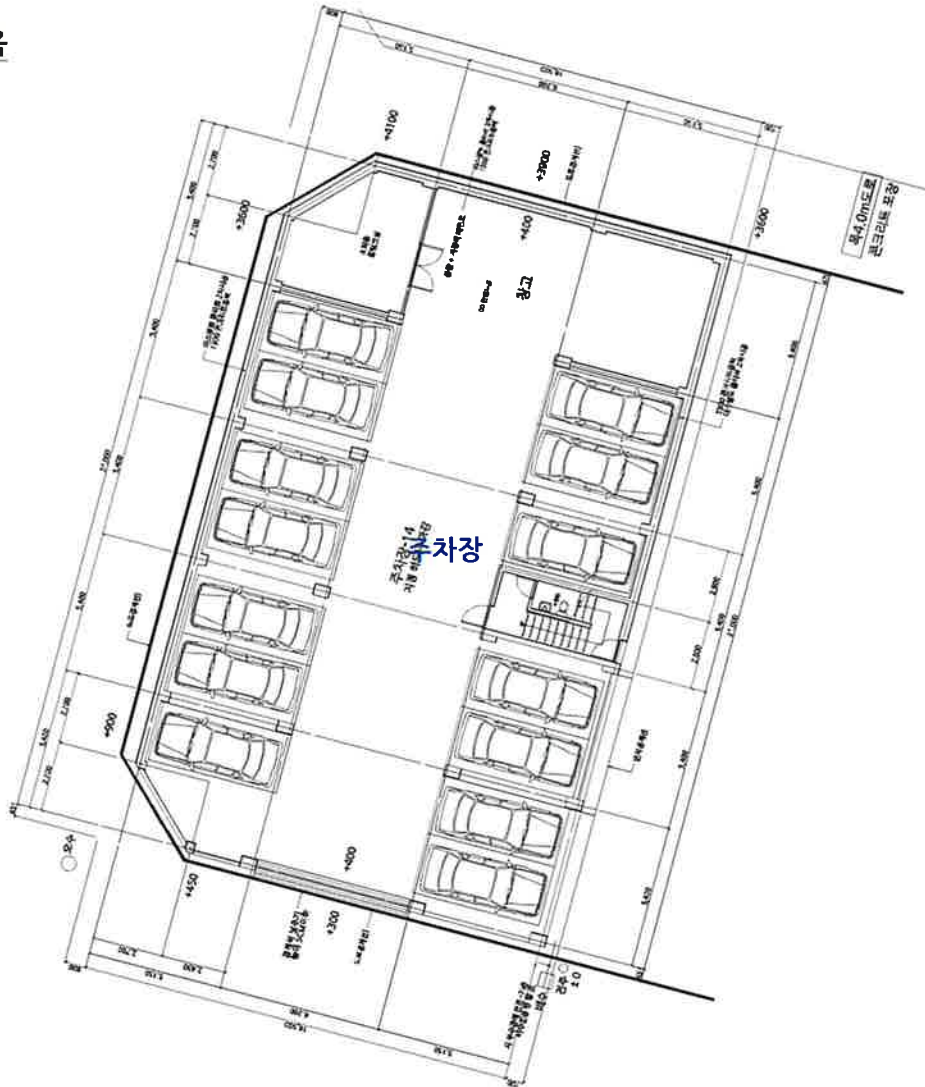
범례

	평가대상토지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건물 3층		제시외건물
	도로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		

건물개황도



축척없음



평가건물
가 지하1층 : 438.21㎡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Mirae & Saehan Appraisal Co., LTD

건물개황도



축척없음



평가건물
가 1층 : 25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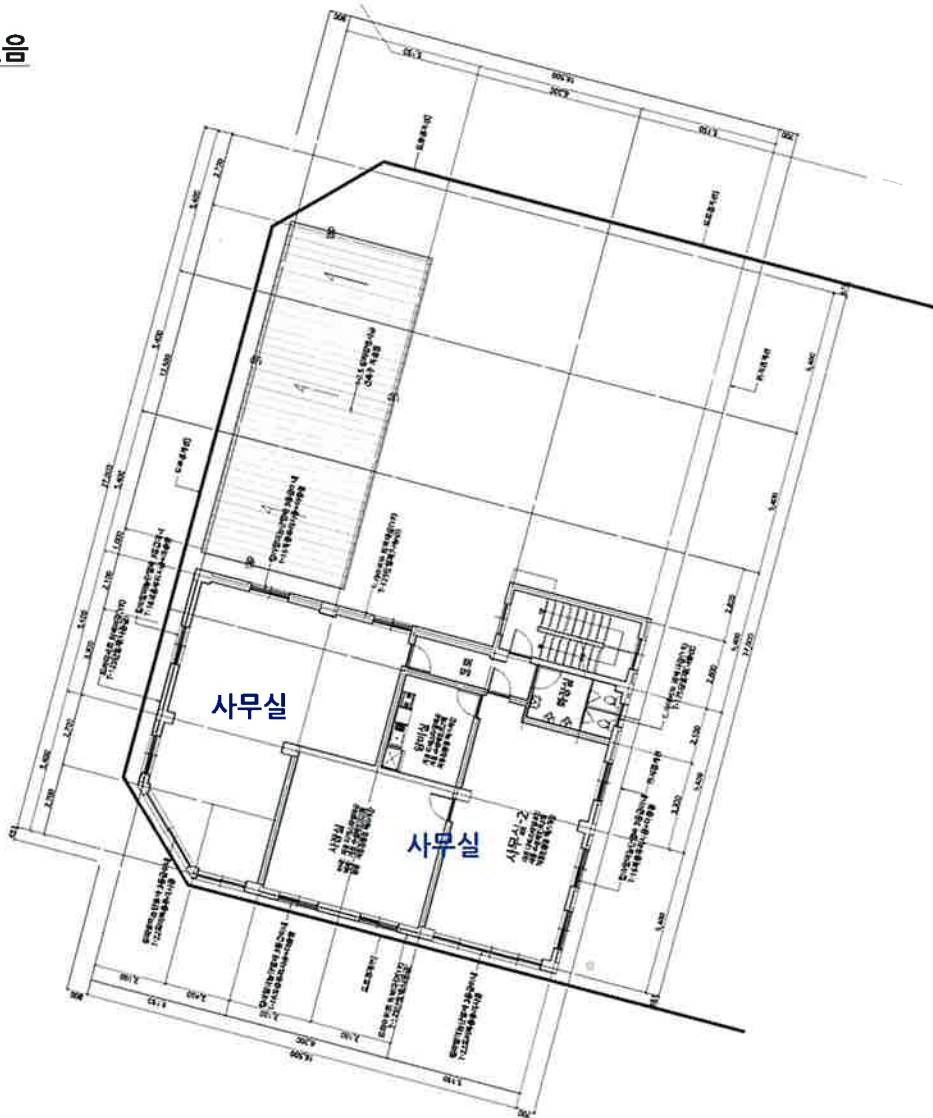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Mirae & Saehan Appraisal Co., LTD

건물개황도



축척없음



평가건물

가 2층 : 187.945㎡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Mirae & Saehan Appraisal Co., LTD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일련번호 가



일련번호 가 지하1층

사 진 용 지



일련번호 가 1층



일련번호 가 1층 주차장(경량철골구조)



일련번호 가 2층



옥상 태양광설비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미래새한 2504-51-17007

서광주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일백육십만오백원정 (₩1,600,500.-)

2025-04-17 자 로 의뢰하신『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70-1』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수 수 료		1,336,636	
실 비	여 비	105,800	* 물건조사비 : 1동 x 10,000원
	토 지 조 사 비	-	* 공부발급내역
	물 건 조 사 비	10,00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000
	공 부 발 급 비	3,000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00
	기 타 실 비	350	* 할인율 적용내역(80% 적용)
	특 별 용 역 비	-	1,006,000+(516,619,790x8/10,000x0.8)
소 계		119,150	≒1,336,636
합 계(공급가액)		₩1,455,000.-	※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가 치 세(세 액)		₩145,500.-	
총 계		₩1,600,500.-	
기 납 부 착 수 금		-	
정 산 청 구 액		₩1,600,500.-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045117007】(으)로 기재하여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410-85-16540】

★ 계 좌 번 호 ★

- ◆ 남광주농협 : 351-1135-2805-13 예금주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광주축산농협 : 355-0074-5353-13 예금주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장

TEL. (061)332-7475 FAX. (061)332-1482